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회를 「항만법」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807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,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,

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정하고 그 외 모든 시설은 허용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,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 확대(안 제2조)

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위험시설, 종교시설, 묘지 관련 시설, 청소년 유해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

설을 허용함

나.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 신설 등(안 제4조 등)

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,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함

다. 비귀속 항만시설 추가(안 제24조 등)

국가 또는 시·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에 ‘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’을 추가함

라. 항만구역 내 금지행위 명확화(안 제35조)

항만에서의 금지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·채취를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함

마.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 체결 시 입주자격 판단 기준 명확화(안 제70조)

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수의계약 시 입주자격 기준 시점을 ‘심의일 직전 3년의 기간’으로 명확히 함

바. 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(안 제47조)

인용조문 오류 정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말한다”를 “제외한 시설을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·군사시설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
제4조제1항 중 “45명”을 “7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항만 시설의 기술기준”을 “항만시설의 기술기준, 건축기술, 건설기술 또는 교통영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

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”를 “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만 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및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4조제1항제1호·제2호,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8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6호부터 제8호까지, 제9호”로, “제9호”를 “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법 제4조제1항제9호”를 각각 “법 제4조제1항제10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4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9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제4호, 제5호 및 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: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(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사항 심의 제24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

제28조제1항제2호 중 “제24조제4항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 및 제8호”를 “제24조제4항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 및 제9호”로 한다.

제35조제1호 중 “포획·채취”를 “포획·채취(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 한정한다)”로 한다.

제47조 중 “법 제43조제1항”을 “법 제43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3항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“공고

일 직전 3년”을 각각 “공고일 또는 심의일 직전 3년(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) 「항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“일반업무시설·판매시설·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	제2조(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.
1. <u>일반업무시설</u>	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<u>종교시설</u>
2. <u>판매시설</u>	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<u>공장</u>
3. <u>주거시설 및 숙박시설</u>	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<u>창고시설</u>
4. <u>정보처리시설</u>	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<u>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</u>
5. <u>근린생활시설</u>	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<u>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</u>
6. <u>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, 운동시설,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</u>	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<u>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
<u><신 설></u>	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4조(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(이하 “중앙심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2. (생략)

3. 항만의 개발·운영, 도시·군 계획, 건축·경관, 환경, 해양레저,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

③ (생략)

23호의 교정시설
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
23의2호의 국방·군사시설
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

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

제28호의 장례시설

제4조(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

----- 70명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 항만시설의 기술기준, 건축기술, 건설기술 또는 교통영향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사항 심의

2.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: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9호(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사항 심의

3. 마리나분과심의회: 「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9호(마리나항만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사항 심의

4.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: 법 제4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9호(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사항 심의

<신 설>

2. -----

----- 법 제4조제1항제10호 -----

3. -----

--- 법 제4조제1항제10호 ---

4. -----
-- 법 제4조제1항제4호, 제5호 및 제10호 -----

5.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: 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(신항만건설에 관한 사

② (생 략) 제24조(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) ① ~ ③ (생 략)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·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8. (생 략) ⑤ (생 략) 제28조(비귀속 토지·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)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. 1. (생 략) 2. <u>제24조제4항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 및 제8호</u>(투기 목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로	<u>항으로 한정한다)의 사항 심의</u> ② (현행과 같음) 제24조(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</u>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제28조(비귀속 토지·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24조제4항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 및 제9호</u>----- -----
--	---

한정한다)에 따른 항만시설 ②・③ (생 략) 제35조(금지 행위)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 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1.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(土石)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 동식물을 포획・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2.・3. (생 략) 제47조(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)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 제70조(입주자격) ①・② (생 략)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“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”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	-----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제35조(금지 행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포획・채취(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 한정한다) ----- ----- 2.・3. (현행과 같음) 제47조(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) 법 제43조제4항----- ----- -----. 제70조(입주자격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공고일 또는 심의일 직전 3년(수
--	---

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⑥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1. ~ 7. (생략)

⑦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“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”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⑧ ~ ⑪ (생략)

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)----
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 공고일 또는 심의일 직전 3년(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)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공고일

또는 심의일 직전 3년(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)-----

-----.

⑧ ~ ⑪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920